

임원 보수 등 지급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회사의 임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수립하여, 임원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고 회사 성과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며,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은 회사의 이사회 결의 혹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에게 적용한다. 단, 비상근 임원에 대한 별도 규정은 제10조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임원 보수** : 임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전 및 현물 가치를 의미하며,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을 포함한다.
- 배당금** :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주주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 상여금** : 임원의 성과 달성도 및 회사 기여도에 따라 정기 보수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인센티브 성격의 보수를 의미한다.
- 퇴직금** : 임원이 임기 만료,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보수를 의미한다.

제2장 임원 보수

제4조 (임원 보수의 구성)

임원 보수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 그리고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으로 구성된다. 필요한 경우 실비변상적 경비(업무추진비 등)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기본급의 결정)

1. 임원의 기본급은 직위,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책임의 정도, 동종업계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2. 기본급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이사회 결의 혹은 주주총회를 통해 책정하며, 연봉제 또는 월정액제로 지급할 수 있다.
3. 기본급은 원칙적으로 매월 정해진 일자에 지급한다.

제6조 (보수 결정 절차 및 승인)

1. 각 임원에 대한 보수 총액의 한도는 매년 이사회 결의 혹은 주주총회를 통해 승인한다.
2. 승인된 한도 내에서 개별 임원의 보수(기본급, 상여금 등)는 이사회 결의 혹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단, 이사회 결의 혹은 주주총회는 보수 결정을 위해 별도의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보수 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 회사의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
 - 각 임원의 직무 수행 능력 및 성과
 - 동종업계 임원 보수 수준
 - 기타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및 주주 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정도

제3장 상여금

제7조 (상여금의 지급 원칙)

1. 상여금은 임원의 경영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하며, 회사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주요 사업 목표 달성도, 개인별 성과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한다.
2. 상여금은 정기 상여와 특별 상여로 구분할 수 있다.

제8조 (정기 상여금의 산정 및 지급)

1. 정기 상여금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이사회 결의 혹은 주주총회에서 임원별 성과 평가를 토대로 산정한다.
2. 성과 평가는 사전에 정해진 **객관적인 지표(KPI)**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o 회사 전체의 재무 성과 (매출액,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 등)
 - o 각 임원이 담당하는 부문의 목표 달성도
 - o 신규 사업 추진 성과, 비용 절감 기여도, 리스크 관리 성과 등 비재무적 성과
3. 정기 상여금의 총액은 당기순이익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개별 임원의 정기 상여금은 해당 임원의 연간 기본급의 [5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4. 지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년 정기 이사회 결의 혹은 주주총회 이후 1개월 이내로 한다.

직급	지급기준	지급시기
대표이사	월 기본급의 150%	년 4회 (설, 추석, 하계휴가, 연말)
이사	월 기본급의 100%	
감사	월 기본급의 100%	

제9조 (특별 상여금의 지급)

1. 회사의 중대한 경영 목표 달성, 특출한 공로, 또는 예상치 못한 성과 달성에 기여한 임원에게는 이사회 결의 혹은 주주총회를 통해 특별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특별 상여금의 지급 기준, 금액 및 절차는 해당 사유 발생 시 이사회 결의 혹은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o 산출기준 : 매년 11월까지의 매출액이 기준 매출액(전년 매출액의 120%) 이

상을 달성할 경우

제10조 (상여금의 환수 및 제한)

1. 임원이 재임 중 **횡령, 배임 등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된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환수 금액 및 절차는 이사회 결의 혹은 주주총회의로 정한다.
 2. 회사가 2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는 등 회사의 재무 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이사회 결의 혹은 주주총회는 상여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제4장 이익배당

제11조 (배당의 원칙)

1. 회사는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으며, 이는 주주 가치 제고와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재투자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배당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12조 (배당의 종류 및 기준일)

1. 이익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배당은 **사업연도 말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지급한다.

제13조 (배당의 결정 절차)

1. 배당금은 이사회 결의 혹은 주주총회에서 제안하여 최종 결정한다.
2. 배당률 또는 배당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당기순이익, 현금흐름, 이익잉여금 수준

- 회사의 미래 성장 투자 계획 및 재정적 필요
- 채무 상환 능력 및 재무 안정성
- 동종업계의 배당 성향 및 주주 기대치
- 이익준비금 및 기타 법정적립금 적립 의무

제14조 (배당 가능 이익의 산정 및 처분 순서)

1. 배당 가능한 이익은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후 산정하며, 법정적립금 및 기타 법령상 적립 의무를 이행한 후의 잔여 이익에 한한다.
2. 회사는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익을 처분한다.
 - **이익준비금의 적립** (상법 제458조에 의거,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금전으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 적립)
 - 기타 법정적립금의 적립
 - 임의적립금의 적립 (회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 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적립)
 - 이익배당

제15조 (중간배당)

1. 회사는 사업연도 중 중간배당을 할 수 있으며,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 혹은 주주총회에서 정하며, **매 사업연도 6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를 기초로 하되, 중간배당 가능 이익 범위를 준수해야 하며, 상법 제462조의3 규정에 따른다.

제5장 퇴직금

제16조 (퇴직금의 지급 원칙)

임원의 퇴직금은 재임 기간 동안의 공로와 회사 기여도를 인정하여 지급하며, 공정하고 투

명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17조 (퇴직금의 지급 대상 및 사유)

1. 퇴직금은 퇴임하는 등기이사 및 감사 등 임원에게 지급한다.
2. 퇴직금은 임기 만료, 사임, 해임, 사망 등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제18조 (퇴직금의 산정 기준)

1. 임원의 퇴직금은 별도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산정 및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은 이사회 결의 혹은 주주총회를 거쳐 제정 및 개정하여야 한다.
3. 퇴직금 산정은 다음의 기준을 고려할 수 있다.
 - (예시 1) **퇴직금 산정계수 방식** : 최종 보수월액 × 재임 연수 × 지급률 (단, 지급률은 직위별로 별도로 정한다.)
 - (예시 2) **명예퇴직금 가산** : 재임 기간 중 회사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예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재임 연수는 1년 단위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제19조 (퇴직금의 제한 및 감액)

1. 임원이 재임 기간 중 횡령, 배임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감액 또는 미지급 범위는 이사회 결의 혹은 주주총회로 정한다.
 2. 회사의 파산, 회생 절차 개시, 또는 그에 준하는 재무적 위기로 인해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울 경우, 퇴직금 지급을 조정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3. 상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다.
-

제6장 보칙

제20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이사회 결의 혹은 주주총회를 통해 개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및 관계 법령과 회사의 정관, 그리고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22조 (시행일)

본 규정은 [YYYY년 MM월 DD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 사항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